

■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[별표 2] <개정 2021. 6. 30.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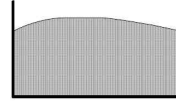
고체화학위험물질 혼적 시 격리기준 (제30조의4제2항 관련)

		고체화학위험물질									
		위험물의 분류	4.1	4.2	4.3	5.1	6.1	7	8	9	MHB
고 체 위 험 물 질	가연성 고체	4.1	X								
	자연 발화성 물질	4.2	2	X							
	물 반응 시 가연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 질	4.3	3	3	X						
	산화성 물질 (작용 제)	5.1	3	3	3	X					
	독성 물질	6.1	X	X	X	2	X				
	방사성 물질	7	2	2	2	2	2	X			
	부식성 물질	8	2	2	2	2	X	2	X		
	기타 위험 물질	9	X	X	X	X	X	2	X	X	
고체화학물질		MHB	X	X	X	X	X	2	X	X	X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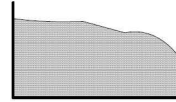
숫자 설명표		
2	격리적재(Separated from): 갑판 아래 적재 시 다른 화물창 또는 다른 구역에 격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중간 갑판이 내화성 및 내액체성인 경우에는 다른 구역에 격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.	
3	구획실 분리적재(Separated by a complete compartment or hold from): 수직 또는 수평방향의 완전한 구획 또는 화물창에 의하여 격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갑판이 내화성 및 내액체성이 아니라면 중간의 완전한 구획에 의한 세로 방향의 격리만이 인정될 수 있다.	
X	「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」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고체화물 개별화물 일람표에서 요구할 경우에만 격리한다.	

[그림 설명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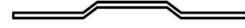
산적 물질



상호 반응성 고체 물질



내액체성 및 내화성 갑판



※ 수직선은 화물구역 간의 가로 방향 수밀격벽(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칸막이벽)을 나타낸다.